식품의약품안전처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대통령령 제33913호) 개정·공포 알림

1.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대통령령 제33913호)이 아래와 같이 개정·공포(공포·시행일 '23.12.12.)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주요 개정 내용	관련 조항
■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관련 규정 정비 -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특례 규정 삭제 및 「행정기본법」과 중복되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관련 규정 삭제 ※ 「행정기본법」 제29조 및 「행정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를 따르도록 함	■ 제26조제2항 ■ 제26조의4

2. 동 개정령은 2023년 12월12일자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(http:www.law.go.kr)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과징금 규정 정비 등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반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(제33913호) 1부. 끝.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수신자 중앙부처(법령 담당부서),농림축산식품부장관(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장),농림축산검역본부장(동물검역과장),시·도 축산물 관련 부서, 보건환경연구원, 동물위생시험소, 축산관련 단체

주무관 남경우 과장 전결 2023. 12. 12. 김성일

협조자

시행 축산물안전정책과-9606 (2023. 12. 12.)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축산물안전정책과 / www.mfds.go.kr

전화번호 043-719-3247 팩스번호 043-719-3270 / nkw98@korea.kr / 대국민 공개